Insurance Business Report
통 권 제 18 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상과 시사점

2003. 8

이 기 형
조 재 현

보험개발원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nsurance Business Report
통 권 제 18 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상과 시사점

2003. 8

이 기 형*
조 재 현**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 연구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목 차 >

[요 약] i

I. 서 론 1

Ⅱ. 미국의 배상책임보험관련 법률적 환경 3
1. 불법행위법률비용의 지속적 증가 3
2. 불법행위관련 배상판결 추이 4
3. 최근 고액배상판결의 원인 6

Ⅲ. 미국 불법행위법의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9
1. 불법행위법의 개정배경 9
2. 불법행위관련 법률의 개정 주요내용 11

Ⅳ.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영향 및 대응 14
1. 손해보험산업의 영향 14
2. 보험회사의 대응 16

Ⅴ. 국내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19
1. 법률적 환경변화에 대비 19
2. 보험상품의 합리적 운영 20

[참고문헌] 22

[별첨자료] 23
1. 미국 배상책임보험 실적 23
2. 미국 배상책임보험종목별 주요 언더라이터 24

< 요 약 >

□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FY'02기준 4,3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1% 성장, 손해보험전체시장에서 2.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손해율은 양호한 상태임.**

o 배상책임보험시장은 일반배상(1,443억원), 전문인배상(1,218억원), 생산물배상(703억원), 근재보험(993억원), 기타보험(31억원)으로 분할하여 발전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음.

o 배상책임보험의 급격한 성장은 IMF이후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책임문제, 인위적인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법의식 향상, '02.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등으로 신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 **반면 미국의 손해보험산업은 배상책임보험종목의 보험영업손실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속화되어 제2의 보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o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은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불법행위관련 법체계(Tort Law)와 배상판결액의 고액화추세 등에 기인함. 배상책임보험의 합산비율(Combined Ratio)이 '80년대말 보험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합산비율(Combined Ratio) 추이 >

년도별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영업배상	생산물	211.9	189.5	179.1	131.9	138.8	156.4	133.3	215.3
	의료배상	108.1	99.7	106.0	107.9	115.7	129.5	133.5	153.3
	기타	123.1	138.7	117.6	108.5	112.2	104.5	110.3	122.2
	소계	132.8	143.6	123.5	110.6	114.5	109.1	112.0	130.2
근재보험		109.1	97.0	99.7	100.7	107.6	115.3	118.2	121.7

o 이에 따라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2.3%로 낮아졌으며, 일부 보험사는 준비금부족 등으로 파산하거나 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 철수하는 사태로 진전되고 있음.

- 특히 의사, 약사 등은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담보제한 및 높은 보험료부과 등으로 배상책임리스크 전가가 어려워 폐업에 이르기까지 하여 의료공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경영악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독특한 법률체계에 기인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기업들의 약화된 국제경쟁력의 회복과 사회적 문제(의료기능이 상실되는 주가 뉴욕주를 비롯한 18개주나 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o 미국의 불법관련비용(Tort Cost)은 '01년 기준 GDP의 2.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의 주요원인은 100만명 이상의 변호사수, 성공보수제도, 집단소송제도의 남용, Deep Pocket Theory적용 등이며 최근에는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 분야에서 고액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o 이러한 미국의 고비용 소송체계는 미국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향후 매년 9%이상 성장하여 2005년에는 GDP의 2.3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o 민사소송 관련 법률의 개혁은 소송남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의 축소, 소송기간 단축과 법률비용의 예측가능성 확보, 원·피고간 법적용의 공평성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주요 개정내용은 징벌적 배상금의 하향 및 한도설정, 의료과실배상법체계의 합리적 개선, 집단소송제도의 남용억제, 석면배상책임대책 마련 등임.
- 이렇게 되는 경우 변호사들이 주별 법 차이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쇼핑식소송행태(이를 "Forum Shopping"이라고 함)를 차단하여 소송남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911테러로 인한 재보험시장의 경색화의 지속 및 수익악화로 배상책임보험의 인수한도가 크게 감소되고 있고 건축물결함, 약국결함, 의료과실, 석면 및 음식료품 분야의 배상책임리스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형 손해보험사일지라도 보상한도를 5,000만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의료배상책임과 같은 고위험분야 보험에서 철수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노출리스크의 파악과 손해액 추세예측이 곤란한 손해발생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보다는 손해청구기준증권(claim made policy)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요율을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음.

- 또한 배상책임보험의 요율을 돈의 시간가치와 같은 재무적 요인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내 배상책임보험시장은 손해율이 60%미만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급성장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100%이상 높은 손해율을 시현하고 있어 미국 배상책임보험시장이 국내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큼.**

o '02.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최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추진 등 새로운 법률체계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책임 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법률체계의 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이 필요함.

o 배상책임리스크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준비금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손해액진전계수, 추세율 등의 보험수리적 기법(actuarial techniques)과 돈의 시간가치 등 재무적 요인(financial factor)을 반영하는 기법을 도입하여야 하며, 또한 배상책임리스크 관련 기초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집적 및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 서 론

□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90년대에 들어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손해율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이하로 양호한 편이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은 매우 높은 편임.

o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FY'02기준 4,3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1% 성장하여 손해보험전체시장에서 2.19%를 점유하고 있음.

- 배상책임보험시장은 일반배상(1,443억원), 전문인배상(1,218억원), 생산물배상(703억원)[1], 근재보험(993억원), 기타보험(31억원)으로 분할하여 발전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음.

<표 1> 국내 배상책임보험(근재포함) 시장의 성장률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수입보험료	성장율	보험금	손해율	점유비
1997	1,917	1.4	1,112	59.3	1.17
1998	2,206	15.1	956	49.9	1.56
1999	2,323	5.3	974	54.1	1.66
2000	3,144	35.3	931	35.1	1.96
2001	3,399	8.1	918	35.1	1.90
2002	4,389	29.1	1,228	50.9	2.19

주 : 손해율은 경과기준(발생손해액/ 경과보험료)손해율이며, 점유비는 전체손보시장에 대한 것임.

o 배상책임보험의 급격한 성장은 IMF이후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책임문제, 인위적인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법의식 향상, '02.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등으로 신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표 2>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신시장 성장 추이

(단위 :억원, %)

	FY'00			FY'01			보험료 성장율
	보험료	손해액	손해율	보험료	손해액	손해율	
지자체배상	7	7	215.1	51	18	57.2	628.6
임원배상	309	-	-	326	30	9.2	5.5
의사배상	56	88	310.7	158	138	139.8	182.1

주 : 손해율은 경과기준(발생손해액/ 경과보험료)손해율임.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전인 FY'00에는 237억원이었으나 시행후인 FY'02에는 703억원으로 3배이상 증가하였음.

□ **미국의 손해보험산업은 배상책임보험종목의 보험영업손실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속화되어 제2의 보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o ‘80년대 후반 제조물책임의 소송증가로 많은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하고 보험구입 곤란 등의 "배상책임보험위기(liability insurance crisis)"가 초래된 바 있었음.

o 최근에 들어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관련 법체계(Tort Law)와 배상판결액의 고액화추세 등으로 배상책임보험의 합산비율(Combined Ratio)이 ‘80년대말 보험위기 때와 같이 150%를 넘어서고 있음.

- ‘01년 미국의 배상책임보험료는 539억달러로 손해보험 전체보험료(3,234억달러)의 16.7%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배상 6.7%, 근재 8.0%, 의료과실 1.9%, 생산물배상 0.6%를 점유함.

□ **이러한 고비용 법률구조로 인해 파생되는 국가적 영향과 보험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보험업계는 관련된 대응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o 연방정부 및 주 정부는 불법행위관련 비용이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매우 높아 약화된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o 보험회사들은 911테러로 인한 담보력 부족에 이어 배상책임보험종목의 영업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보험요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추세임.

□ **본 보고서는 미국의 법률체계가 손해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회사들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국내 배상책임보험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임.**

II. 미국의 배상책임보험관련 법률적 환경

1. 불법행위법률비용의 지속적 증가

□ **미국의 불법관련비용(Tort Cost)은 '01년 기준 GDP의 2.0%로 다른 선진국(industrialized nations)에 비하여 2배 이상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남.**

o GDP에 대한 다른 국가의 불법행위관련비용은 이탈리아 1.7%, 독일 1.3%, 벨기에 1.1%, 호주 1.1%, 스페인 1.0%, 스위스 0.9%, 캐나다 0.8%, 일본 0.8%, 프랑스 0.8%, 영국 0.6%, 덴마크 0.4%로 조사되었음[2].

o 1인당 평균 배상판결액은 2 3배 이상 높으며, 국민들의 소송관련세금(litigation tax)은 1인당 721달러에 이름.

□ **최근 50년간 미국의 불법행위 관련 법률비용은 100배 이상 상승하여 다른 사회적 지표의 상승률(GDP는 34배 증가, 인구는 2배증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o '01년의 경우 전년대비 14.3%증가하여 1986년이래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함.

<표 3> 미국의 불법행위 관련비용의 증감추이

(단위 : 십억 US $, %)

연도	불법행위비용		GDP대비 비중		1인당 불법행위비용($)		
	금액	증가율	금액	비중	백만명	1인당비용	1인당비용*
1950	1.80	-	294	0.61	152	12	87
1960	5.4	11.6	527	1.03	181	30	180
1970	13.9	9.8	1,040	1.33	205	68	309
1980	43	12.0	2,796	1.54	228	189	406
1990	129.6	11.7	5,803	2.23	249	520	704
2000	179.7	3.3	9,825	1.83	281	638	657
2001	205.4	14.3	10,082	2.04	285	721	721

주 : 불법행위비용의 증가율은 10년 평균이며, 1인당비용*은 '01년 기준임.
자료 : Tillinghast-Towers Perrin, *U.S.Tort Costs:2002 Update*, 2003,pp.9-11

2) Robert P. Hartwig,Ph.D., *Trends in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III, April 2003

2. 불법행위관련 배상판결 추이

□ 최근 배상판결액의 고액화 현상 심화

o 최근 배상판결액은 소송판결 8건 중 1건이 1백만 달러 이상의 고액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기업들이 배상한 금액도 급등하게 되었는데 최근 5년 동안 10개 기업 중 1개 기업이 5백만 달러이상을 배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2002년중 고액 배상판결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판결금액	소송이슈	관할재판소
28,000	생산물배상책임(담배)	캘리포니아
2,200	과실(약국 과오)	미주리
270	개인 상해(화상)	켄터키
225	생산물배상책임(롤오버)	텍사스
150	생산물배상책임(담배)	오리건
122	생산물배상책임(자동차사고)	알라마바
97.2	사업사기	캘리포니아
95.2	의료과실(출생)	뉴욕
91	의료과실	뉴욕
80	의료과실(출생)	뉴욕
80	생산물배상책임(자동차)	미주리

자료 : David Dial, Esq 외 4인, *Tort Excess : The Necessity for Reform from 1 Policy, Legal and Risk management Perspectiv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03, p.1

□ 최근 고액판결분야

o 100만 달러이상의 고액배상판결의 빈도를 보면 특정분야의 소송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음(<표 5> 참조).

o 배심판결연구(Jury Verdict Research)[3]에 따르면 사업상 과실부분이 연간 약 20% 증가하였음. 생산물배상책임의 경우 '94년에 비해 42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3) http://www.juryverdictresearch.com/Press_Room/Press_releases/press_releases2003.html

<표 5> 백만달러이상 소송판결액의 증가율추이

(단위 : %)

구 분		자동차배상	개인과실	구내과실	사업과실	정부과실	의료과실	생산물배상
증가율	'95-'97	4	10	8	21	21	36	42
	'98-'99	4	11	11	27	25	43	59
	'00-'01	6	10	17	44	47	54	68
승소율	'94	58	-	43	-	-	-	39
	'97	59	-	45	57	-	-	39
	'01	68	-	57	66	-	-	56
배상액($)	평균(천)	91	79	-	-	175	355	527
	100만 이상	11.2	16.2	-	-	11.7	26.2	30.8
	천만 이상	6.1	6.7	-	-	9.1	13.1	13.1

주 : 배상액은 '96-'97년간의 인적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 100만 달러이상과 천만달러이상은 배상액 중 점유비를 의미함.

자료 : Robert P. Hartwig,Ph.D., *Trends in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I.I.I., April 2003 및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 Federal Tort Trials and Verdicts*, 1996-97, May 3,1999, p.5 참조.

□ 현행 법률체계상 소송 관계 당사자간 평등성 상실

o 미국의 소송제도에서의 배심원제도, 많은 변호사 수(약 100만명), Deep Pocket Theory, 징벌적배상금(punitive damage) 부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특징적인 제도의 존재로 법률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높으며, 관계 당사자간 평등적이지 못한 실정임.

o 최근 피해자 등 원고의 승소확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기업이 패소하는 확률은 더 커지고 있고 100만달러 이상의 고액판결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o 미국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배상판결액의 50%정도만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4].

- 배상판결액의 용도별 지출항목을 보면, 경제적 손실피해(economic loss) 22%,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21%, 방어비용(defense cost) 14%, 비경제적손실

4) Tillinghast-Towers Perrin, *U.S.Tort Costs:2002 Update*, 2003, p.17

보상(awards for noneconomic loss) 24%, 원고의 변호사 비용(claimants' attorney fees) 19%로 나타났음.

o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주별로 다른 법제를 채택하고 있어 원고에게 더 유리한 주와 그래도 당사자간 평등성이 존재하는 주로 대별되고 있음.

- 주별 민사소송의 배상판결액 결정과 관련된 평등성을 집단소송의 취급, 징벌적 배상금, 배심원의 예측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그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음.

<표 6> 주별 소송체계상 평등성 차이 현황

	상위 10개주(Best States)		하위 10개주(Worst States)	
해당주	1.델라웨어	6.N다코타	41.뉴멕시코	46.텍사스
	2.네브라스카	7.유타	42.S캐롤라이나	47.루이지애나
	3.아이오와	8.버지니아	43.하와이	48.알라마바
	4.S다코타	9.미네소타	44.캘리포니아	49.W버지니아
	5.인디애나	10.뉴햄프셔	45.아칸사스	50.미시시피

자료 : Robert P. Hartwig, Ph.D., *Trends in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I.I.I., April 2003

o 특히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피고 기업이나 보험회사에 더욱 불공정한 지역을 "Judicial Hellholes" 라 부르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다음과 같음.

- 캘리포니아주(Alameda, LA, San Francisco County), 텍사스주(Jefferson, Hidalgo, Starr County), 미시시피(City of St. Louis, 22nd Judicial District), 일리노이(Madison County), 루이지애나(Orleans Parish)
- 이들 지역의 소송의 경우 과거의 판례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 배상판결(catastrophic liability verdict)을 결정하기도 하며, 피고가 1%의 과실이 있음에도 100%를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등 예외적인 결과가 많이 발생함.

3. 최근 고액 배상판결의 원인

□ 사회적 인플레이션 증가

o 백만달러에 대한 가치가 '90년대 미국인의 부의 증대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훨씬 낮아졌음. 대부분의 미국인은 당첨금을 최저 천만달러이상으로 하지 않는 한 복권가게에서 줄을 서서 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를 입증함.

o 이와 같은 사회적 인플레는 소송에도 적용되어 피해자나 배심원의 심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주별 불법행위관련법률개정 현황은 "ATRA, Tort Reform Record, June 30, 2003"[5] 참조.

□ 원고 변호사의 경향

o 원고의 변호사 대부분은 열정적으로 피해자를 도우려는 입장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시스템이 변호사 개인의 장점을 부각시켜 수임료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는 변호사들도 있음.

o 평균적으로 성공보수제도로 배상판결액의 19%정도를 수임료로 받고 있는 변호사들은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배상판결금액이 고액으로 결정되도록 매우 정교한 소송전략을 구사함.

□ 의료비용의 인플레이션

o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비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불법행위 관련 비용 증가의 도화선이 되고 있음. 또한 국민들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는 가운데 심하게 다친 피해자의 경우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해 고액의 간병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o 이로 인해 장기간병비용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상금보다 훨씬 많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비경제적 보상액이 경제적 보상액의 몇 배나 높은 실정임. 즉, 의료비관련 비용이 증가할수록 비경제적 보상액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집단소송제도의 남용

o 큰 소송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원고 변호사풀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o 심지어 집단소송시 집단을 구성하는 원고가 개별적으로 동질적이지 못한 경우에도 판사가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주도 있음.

---

5) 미국의 불법행위관련법의 개정상황은 ATRA(The American Tort Reform Association)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http://www.atra.org).

□ **불법행위 관련법의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부진**

o 주 정부에서는 소송의 제기빈도와 배상판결액을 줄이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 등의 민사소송 관련 체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변호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신속히 논의되지 못하고 이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

o 심지어 1980년대 후반 배상책임보험위기 이후 특정부분에 대한 개혁법안을 채택하지 않은 주도 많이 있음.

□ **배심원들의 기업 및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

o 배심원들의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경향은 엔론의 분식회계와 계속적인 기업들의 경영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기업들의 사기와 불성실한 경영으로 파생되는 문제로 미국인들은 미국 기업들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배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o 또한 기업들은 자치단체에 공장을 세워 운영하여 주민들의 일자리를 보급하였던 기업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거나 빈번한 해고로 가족들의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됨.

- 이에 따라 기업의 근로자로 일하였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 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역주민이 피해자가 된 경우 기업들로부터 고액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Deep Pocket Theory의 적용**

o Deep Pockets Theory는 불법행위관련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딥 포켓(배상 자력이 있는 가해자)에 손해 배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함. 즉, 대기업은 가령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전가해서 견뎌 낼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평성' 관점에서도 타당하다는 논리임.

- 따라서 기업이 특정사고에 일부만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딥 포켓인 까닭에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o 이 이론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원고 변호사들은 재무적으로 배상능력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수임수수료와 배상액을 받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경향이 존재함.

III. 미국 불법행위법의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1. 불법행위법의 개정배경

소송남용은 고물가, 저임금, 국민들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기업에게는 합리적인 소송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의 기업에 비해 경쟁력 약화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의 합리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연방 및 주 정부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o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불법행위 관련 비용은 미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음. 불법행위관련 비용은 2001년 GDP의 2.04%에 이르고 있으나 향후 매년 9%이상 성장하여 2005년에는 2.3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7> 불법행위비용의 향후 전망치

(단위: 십억달러, %)

년도	불법행위비용	GDP	GDP비중
2001	205.4	10,082	2.04
2002*	223.9	10,435	2.15
2003*	244.1	11,061	2.21
2004*	266.0	11,725	2.27
2005*	290.0	12,428	2.33

주 : 2002년이후 자료는 추정치를 의미함.
자료 : Tillinghast-Towers Perrin, *U.S.Tort Costs:2002 Update*, 2003, p.19

o 또한 주 정부의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학적 분석결과(The U.S. Chamber Institute)[6]에 의하면 주 정부의 불법행위관련 법률의 개혁과 주 경제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공정한 불법행위관련 법률체제를 갖고 있는 주는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여 주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6) http://www.litigationfairness.org/who.html

- 불공평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주의 경우 관련 법률비용을 임금, 세금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가 없으므로 도로,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이 미약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에게는 높은 법률비용 부담으로 국제경쟁력 약화

o 미국의 불법행위 관련 시스템은 기업들에게 크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증가하는 소송제기는 기업의 인적·재무적 자원에 큰 제약요인으로 대두됨.

- 보험회사들이 911테러이후 재보험시장의 경색화 등으로 기업포괄보험(commercial umbrella insurance)의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업들은 크게 증가된 배상책임리스크의 보험전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o 석면(asbestos liability)[7]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는 인수초기에 배상책임리스크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료의 부담 없이 담보하여 주었으나 현재는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2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기업과 보험회사에게는 막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는 10년 전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배상액이 천문학적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8> 미국 석면 배상책임비용 추정액

	1982	2003.4
소송제기건수	21,000	600,000
총비용	10억달러	540억달러
파산기업	3	54
장래추정비용	380억달러	2000억달러초과

자료 : Robert P. Hartwig,Ph.D., Liability Trends, *Issues and Jury Verdicts:Impact on Insurance Liability and Excess casualty Markets(RIMS Annual Meeting)*, I.I.I., April 2003

7) 60만명이상의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8천개이상의 기업이 피고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60개 기업이 파산하여 6만여명의 근로자가 직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iii.org/media/facts/statsbyissue/litigiousness 참조

- 2000억달러의 석면배상비용은 미국보험회사가 30%(600억달러), 외국보험회사가 31%(610억달러), 해당기업이 39%(780억달러)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민들의 배상책임리스크에 노출

o 현재 미국 국민 1인당 불법행위관련 비용은 소송세금 721달러에 동일함. 또한 배상책임의 고비용은 기업의 주식, 연금(401k),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디플레 시켜 개인들의 은퇴계획에 혼란을 줄 수 있음.

- 불법행위관련 비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05년에 1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o 거대배상책임리스크를 배상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기업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심지어는 공장을 폐쇄하기도 하여 국민들은 장래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의료기기, 건설결함, 보안배상책임보험(security liability)과 같은 중증 배상책임분야(severe liability)에서 나타나고 있음.

- 그 결과 의사들은 스트라이크를 하고 건설프로젝트는 취소, 기타 필요한 서비스와 중요한 상거래도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음.

2. 불법행위관련 법률의 개정 주요내용

□ 불법행위법률 개혁

o 민사소송 관련 법률의 개혁은 소송남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의 축소, 소송기간 단축[8]과 법률비용의 예측가능성 확보, 원·피고간 법 적용의 공평성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o 불법행위 관련 법률의 개혁은 부시행정부가 다른 행정부보다 친기업적인 성향이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더욱 신속히 추진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개혁법안은 재무적 능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변호사들의 반대가 예상되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큼.

---

8) 미국의 불법행위관련 소송의 평균종결기간을 '96년과 '97년을 기준으로 보면 2년 미만이 72.4%, 2년 이상 4년 미만이 23.9%, 4년 이상이 3.7%로 나타났음.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 Federal Tort Trials and Verdicts*, 1996-97, May 3,1999, p.9

□ 징벌적 배상금의 하향

o 2003.4월 유타주 배심원들은 2명의 자동차보험계약자들이 스테이트팜에 제기한 소송(State Farm v. Campbell)에서 145백만달러의 징벌적배상금(punitive damage)을 부과(이 경우 경제적 배상금액의 145배에 해당) 함.

o 이러한 고액의 징벌적배상금의 부과는 불법행위 관련 비용의 고액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정한도로 축소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집단소송제도의 제한

o 미국 국민들의 83%가 소송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집단소송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임.

- 이에 따라 소송의 통제불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등에서의 논의가 '03.4월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상원법안 Class Action Fairness Act : S. 274, 하원 법안 H.R. 2341).

※ 상원 법사위는 배상청구금액이 500만 달러이상인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단 원고의 2/3가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시민인 경우 주 법원에서도 소송제기 가능)하는 내용을 4월에 승인함.

※ 하원의 경우는 '03.6.12일 집단소송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배상청구금액이 200만 달러이상인 집단소송의 경우 집단을 구성하는 피해자(원고)중 한 명이라도 피고기업이 있는 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이렇게 되는 경우 변호사들이 주별 법 차이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쇼핑식소송행태(이를 "Forum Shopping"이라고 함)를 차단하여 소송남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의료과실배상책임 법체계의 개선

o 연방차원의 의료과실배상책임관련 법률의 개혁은 캘리포니아주 의료손해보상개혁법(Medical Injury Compensation Reform Act. H.R. 5)을 모델링하여 추진되고 있음.

o '03.3월 하원이 마련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and Litigation Reform Act, H.R. 1116)[9].

- 의료과실사고발생이후 1년 이내에 발견하거나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징벌적 배상금과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 25만 달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변호사 수임료도 슬라이딩스케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원·피고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배상금을 결정토록 함.

□ 석면배상책임문제 해결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

o 석면관련 원고, 보험회사, 노동계 및 민사관련 변호사들은 최대의 석면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발히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논의되고 있음.

- 상원법안 (S. 413, Asbestos Claims Criteria and Compensation Act of 2003)[10], 하원법안 (HR.1114, Asbestos Compensation Act of 2003)[11]이 상정되어 있음.

o 석면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음.

- 보험회사와 기업들로부터 기부 받아 신탁기금(Trust Fund)을 조성하여 향후 수 십년 뒤 청구된 배상을 보상함.
- 소송제기 전에 석면에 기인한 질병여부의 판명, 손해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및 법률비용의 한도설정 등임.

9) http://www.theorator.com/bills108/hr1116.html
10) http://www.theorator.com/bills108/s413.html
11) http://www.theorator.com/bills108/hr1114.html

IV.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영향 및 대응

1. 손해보험산업의 영향

□ 보험산업측면

o 최근 손해보험사는 배상책임비용의 증가, 주식시장의 위축과 40년만의 초저금리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 2001년 손보사의 법정 자기자본이익율(statutory accounting rate of return : 순이익/ 계약자잉여금)이 준비금부족적립제도(adverse development reserve)[12]도입에 따른 막대한 준비금적립으로 -2.3%미만으로 나타났음.

<표 9> 미국 손보산업의 자기자본이익율 추이

년도별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이익율(%)	10.6	9.0	9.5	11.9	9.0	6.7	6.5	-2.3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FACT BOOK 2003, p.20

- 손보사들의 담보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특히 초과손해액 특종보험의 담보력이 더욱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10>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합산비율(Combined Ratio) 추이

년도별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영업배상	생산물	211.9	189.5	179.1	131.9	138.8	156.4	133.3	215.3
	의료배상	108.1	99.7	106.0	107.9	115.7	129.5	133.5	153.3
	기타	123.1	138.7	117.6	108.5	112.2	104.5	110.3	122.2
	소계	132.8	143.6	123.5	110.6	114.5	109.1	112.0	130.2
근재보험		109.1	97.0	99.7	100.7	107.6	115.3	118.2	121.7

o 준비금부족 적립제도는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압박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음. 1993년부터 2002년 동안 파산한 손보사의 50%이상이 준비금의 부족에 기인

12) 뉴욕주 보험법 "§4117 Loss and loss expense reserves (g)"에 의하면 IRIS Test 3가지(IRIS test #9, #10, #11)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준비금부족회사로 추출하고 부족한 만큼 추가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①#9 One year reserve development to surplus : 20% 이상, ② #10 Two year reserve development to surplus : 20% 이상, ③ #11 Estmated current reserve deficiency to surplus : 25% 이상)

한다는 점에서 동 준비금적립제도가 도입된 것이나 보험사들에게는 부족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이익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 미국 손보사들은 2002년도에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였지만 아직도 과소 적립한 준비금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종목에서 추산된 것임.

o 2002년도에는 38개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하였으며, 많은 손보사들의 신용등급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하락하였음[13].

- 석면배상책임, 준비금부족, 경영문제(업무확장, 전환), 재보험미수, 투자수익 하락, 우발적 상황전개 등이 그 원인임.

o 재보험사는 원보험회사 보다 재무적으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하드마켓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재보험사는 911 테러로 인해 재무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02년도의 경영실적이 손보사들보다 훨씬 나빠진 실적을 보였음.
- 세계 10대 재보험사들의 신용등급은 '02년도에 모두 A등급이었으나 '03.1월 현재 4개사는 B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그중 1개사는 파산하였음.

□ 보험수요자 측면

o 배상책임보험의 수요자들은 불법행위비용의 급등과 손해보험사들의 경영악화로 고액의 배상책임리스크를 전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불법행위관련법의 개혁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므로 계약자의 고액 보험료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o 특히, 향후 건축물결함(construction defects), 약국결함(pharmacy defects),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 석면과 같은 특정한 배상책임리스크의 보험구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불법행위관련 비용의 계속적인 증가와 예기치 못한 비용부담으로 많은 보험회사들은 특정한 리스크의 인수를 중단하고 있음.

---

13) I.I.I.의 Insolvencies/ Guaranty Funds 참조(http://www.iii.org/media/hottopics/insurance/insolvencies)

- 몇몇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이들 고위험 리스크를 인수하고 있지만 보상한도를 5000만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으로 보임.

o 패스트푸드 제조업체의 경우 향후 배상책임소송이 증가할 잠재성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음. '02.4월 스웨덴 국립식품청(National Food Administration)은 튀긴 음식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아크릴아미드(Acryl Amide)가 다량 함유되었다는 것을 발표했고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함(대상 : 후렌치후라이, 빵, 포테이토칩 등).

- 음식과 음·식료품 제조기업은 이들 제품이 산부인과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소송 건에 대한 법적 방어에 나서고 있고 관련소비자들에게 과음 또는 과식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를 하는 등 제조물책임의 리스크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음.

2. 보험회사의 대응

□ 주요 보험시장 철수 또는 보험상품의 제한적 운영

o 최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배상액이 급등함에 따라 시장에서 철수하는 보험회사가 증가하고 있고 배상책임리스크가 높은 산부인과의사(obstetricians/ gynecologists)들도 폐업을 하고 있어 12년만에 의료과실배상책임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모든 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아칸사스, 일리노이, 플로리다, 텍사스, 뉴저지, 뉴욕, 워싱톤 주 등 18개 주에서 이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음.

<표 11>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험영업손실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보험영업손익	-1,135	-344	112	14	-289	-388	-805	-1,529	-1,839	-3,001
누적보험손익	-1,515	-1,859	-1,747	-1,723	-2,022	-2,410	-3,215	-4,744	-6,583	-9,585
평균배상액	-	-	1,14	2,02	1.88	1.93	2.92	3.29	3.41	3.90
의료비상승율	10.1	8.0	-1.1	2.1	2.5	0.2	6.1	7.3	8.1	11.2

자료 : Robert P. Hartwig,Ph.D., *Trends in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I.I.I., April 2003

o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합산비율이 '80년대 후반의 배상책임보험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임('01년 합산비율 215%).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최대 이슈는 석면이며, 향후 음·식료품의 배상책임청구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o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경영실적 악화와 세계 재보험시장의 하드마켓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축소, 담보조건 강화 등 신중한 언더라이팅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노출리스크의 파악과 손해액 추세예측이 곤란한 손해발생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보다는 손해청구기준증권(claim made policy)의 제공으로 제한적 운영을 함.

□ 보험요율의 인상, 적용

o 배상책임리스크를 담보하는 종목 중 불법행위관련 법률과 밀접한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손해율이 150%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요율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임.

- 또한 주식시장의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수익 확보가 곤란한 실정도 요율인상의 요인으로 작용.

<표 12 >대리점, 중개인 요율적용 설문결과('02년 4/4분기)

보험종목	요율인상폭						
	0%	10%이내	10-20%	20-30%	30-50%	50-100%	100%초과
영업용자동차	6	14	42	25	8	1	0
근재보험	8	17	25	24	10	2	2
일반배상책임	7	13	29	37	11	0	0
상업포괄보험	8	3	21	21	26	10	5
상업재물보험	8	16	25	25	18	3	0
임원배상책임	6	4	22	23	18	9	3
건설공사보험	4	8	17	18	23	9	4
테러담보	12	5	8	12	5	0	6
기업휴지	13	19	36	14	4	0	0
보증보험	8	16	16	15	6	1	1
의료배상	1	5	6	6	12	12	16

자료 : Testimony of Travis Plunkett, Legislative Director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Before the Sub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 Regarding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Rates,* July 17 2002,(http://www.consumerfed.org/Med_Mal_House_testimony.pdf)

o 또한 배상책임보험의 요율은 악화된 보험영업실적 외에도 배상책임 비용의 계속적인 증가 등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인상을 하고 있음.

- 소송제기 빈도 및 심도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배상액 급등
- 배심원의 Deep Pocket Theory의 무분별한 적용과 징벌적 배상금의 부과로 고액판결 경향 지속
- 새로운 배상책임 리스크의 출현으로 보험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실정
- 의회, 주 정부 등의 정치적 영향

o 배상책임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이 길어 미지급보험금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하고 돈의 시간가치 및 법적 환경의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돈의 시간가치와 같은 재무적 요인들을 반영하는 보험요율산정기법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V. 국내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국내 배상책임보험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나 언더라이팅, 보험료산정 등이 낙후된 실정임.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률적 환경은 기본적으로 많이 다르나 미국에서 다시 일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의 경영악화현상과 보험회사들의 대응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다면 향후 배상책임보험 시장을 성장시키고 건전한 보험상품운영을 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됨.

1. 법률적 환경변화에 대비

o 국내에서 불법행위관련 법적 환경은 '90년까지만 해도 그다지 부각되지 못하였으나 '97년 금융위기와 최근 대형사고의 빈발, '02.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법의식이 향상되고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보상권리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13> 법률 상담건수 증가율 추이

연도	법률상담건수		인구10만명당 상담건수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1993	494,595	-	1,119	-
1994	634,128	28.2	1,422	27.1
1995	683,334	7.8	1,515	6.5
1996	1,082,152	58.4	2,378	57.0
1997	1,161,231	7.3	2,524	6.1
1998	1,590,768	37.0	3,428	35.8
1999	1,599,724	0.6	3,411	-0.5
2000	1,894,228	18.4	4,005	17.4
2001	3,283,801	73.4	6,942	73.3

o 제조물책임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적용 원리 및 소송제도가 미국과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과의 주요차이점으로는 변호사의 성공보수제도, 배심원제도,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Deep Pocket Theory, 많은 변호사수 등임.

<표 14> 주요국가의 변호사수 및 1인당 인구비

	미국 (1990)	독일 (1989)	영국 (1991)	프랑스 (1991)	일본 (1991)	한국 (1993)
변호사수	755,694	75,493	93,852	24,864	19,353	2,684
1인당 인구비	330	817	539	2,351	6,390	16,393

주 : 2001년도말 우리나라의 개업변호사는 4,618명으로 1993년에 비하여 72%증가하였으며 변호사 1인당 인구비는 9,896명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증권부문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14]이고 이것이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분야에 확대, 적용된다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비용은 크게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시장에서 보듯이 법률적 환경은 보험회사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별 법률체계를 이해하여 관련보험상품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험상품의 합리적 운영

□ 전문적인 언더라이팅

o 배상책임보험은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리스크의 특성, 이에 관련된 법체계, 국민들의 책임의식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한 언더라이터가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인수를 하여야 할 것임.

o 특히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은 미국 손해보험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적정보험가격과 담보기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수지상등의 원칙에 부합한 보험요율산출방법의 도입

o 재물보험에 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의 요율산정은 반영하여야 할 요소가 더 많이 있음. 특히 보험회사의 보상책임기간이 길어 미지급보험금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곤란함.

14) 송영길의원 등 34인으로부터 발의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 2000년 11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정부로부터 증권관련소송법안이 2001년 12월 27일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2003년 6월 7일에는 임태희 의원등 34인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여 논의되고 있음.

o **따라서 장래 수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율의 산출 및 적용, 보유위험분석 등을 통한 배상책임보험상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통계가 체계적으로 집적·관리되어야 함.**

- **보험료는 담보리스크별 손해액진전계수**(loss development factor), **추세율**(trend factor) **등의 보험수리적 기법**(actuarial techniques)**과 돈의 시간가치 등 재무적 요인**(financial factor)**을 반영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에 부합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 참 고 문 헌 >

ATRA(The American Tort Reform Association), *Tort Reform Record*, June 30, 2003

David Dial, Esq 외 4인, *Tort Excess : The Necessity for Reform from 1 Policy, Legal and*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FACT BOOK 2003*, p.20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Risk management Perspective*, 2003, p.1

Robert P. Hartwig,Ph.D., *Trends in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I.I.I., April 2003

Robert P. Hartwig,Ph.D., *Liability Trends, Issues and Jury Verdicts:Impact on Insurance Liability and Excess casualty Markets(RIMS Annual Meeting)*, I.I.I., April 2003

Testimony of Travis Plunkett, Legislative Director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Before the Sub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 Regarding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Rates*, July 17 2002,(http://www.consumerfed.org/Med_Mal_House_testimony.pdf)

Tillinghast-Towers Perrin, *U.S.Tort Costs:2002 Update*, 2003, pp.9-11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 Federal Tort Trials and Verdicts*, 1996-97, May 3,1999, p.9

http://www.atra.org

http://www.iii.org/media/facts/statsbyissue/litigiousness

http://www.iii.org/media/hottopics/insurance/insolvencies

http://www.litigationfairness.org/who.html

[별첨자료]

1. 미국 배상책임보험 실적

□ 의료과실배상책임보험

(단위 : 천달러, %)

연도	보유보험료	증감율	합산비율	증감(%p)	평균보험금($)
1992	4,133,567	1.60%	127.9	24.2	-
1993	4,370,812	5.70%	108.1	-19.8	-
1994	4,780,537	9.40%	97.6	-10.5	-
1995	4,800,552	0.40%	99.7	2.1	2,022,607
1996	4,875,486	1.60%	106	6.3	1,884,633
1997	4,892,496	0.30%	107.9	1.9	1,930,540
1998	5,145,066	5.20%	115.7	7.8	2,920,915
1999	5,104,093	-0.80%	129.5	13.8	3,288,228
2000	5,586,584	9.50%	133.5	4	3,409,684
2001	6,072,468	8.70%	153.3	19.8	3,902,058

자료 : http:/ / www.iii.org/ media/ facts/ statsbyissue/ litigiousness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단위 : 천달러, %)

연도	보유보험료	증감율	합산비율	증감(%p)	평균보험금($)
1992	1,891,092	-11.80%	147.1	11.6	-
1993	1,859,068	-1.70%	211.9	64.8	-
1994	1,992,252	7.20%	131.4	-80.5	-
1995	1,763,833	-11.50%	189.5	58.1	2,933,880
1996	1,837,538	4.20%	179.1	-10.4	2,670,917
1997	1,745,788	-5.00%	131.9	-47.2	3,336,679
1998	1,607,661	-7.90%	138.8	6.9	2,691,619
1999	1,580,401	-1.70%	156.4	17.6	5,917,968
2000	1,415,353	-10.40%	133.3	-23.1	6,054,674
2001	2,018,399	42.60%	215.3	82	9,113,218

자료 : http:/ / www.iii.org/ media/ facts/ statsbyissue/ litigiousness

□ 영업배상책임보험

(단위 : 천달러, %)

연도	보유보험료	증감율	합산비율	증감(%p)	평균보험금
1992	17,005,977	0.90%	133.2	22.9	
1993	17,751,659	4.40%	132.8	-0.4	
1994	18,802,092	5.90%	125.5	-7.3	
1995	18,581,740	-1.20%	143.6	18.1	
1996	19,575,820	5.30%	123.5	-20.1	
1997	20,088,167	2.60%	110.6	-12.9	
1998	19,017,955	-5.30%	114.5	3.9	
1999	18,764,629	-1.30%	109.1	-5.4	
2000	19,917,458	6.10%	112.0	2.9	
2001	21,890,639	9.90%	130.2	18.2	

주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된 실적임.
자료 : http://www.iii.org/media/facts/statsbyissue/litigiousness

2. 미국 배상책임보험종목별 주요 언더라이터

□ 의료과실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그룹	2001원수보험료(천 $)	M/S(%)
MLMIC Group	704,379	9.70
St Paul Companies	583,612	8.0
GE Global Insurance Group	405,007	5.6
ProAssurance Group	339,665	4.7
Zurich/Farmers Group	315,901	4.3
Health Care Indemnity Inc	287,672	4.0
Doctors Company Ins Group	271,621	3.7
CNA Insurance Companies	251,071	3.4
NORCAL Group	248,443	3.4
Allianz of America, Inc	233,129	3.2

자료 : http://www.iii.org/media/facts/statsbyissue/litigiousness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 그룹	2001원수보험료(천 $)	M/ S(%)
Zurich/ Farmers Group	255,724	10.7
St Paul Companies	246,718	10.3
Kemper Insurance Companies	183,321	7.6
Chubb Group of Insurance Cos	148,723	6.2
American International Grp Inc	134,829	5.6
Allianz of America, Inc	112,340	4.7
Liberty Mutual Insurance Cos	94,727	4.0
W. R. Berkley Group	74,066	3.1
Markel Corporation Group	65,063	2.7
Fairfax Financial (US) Group	58,875	2.5

□ 일반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 그룹	2001원수보험료(천 $)	M/ S(%)
American International Grp Inc	5,851,317	19.5
Zurich/ Farmers Group	2,129,088	7.1
Chubb Group of Insurance Cos	1,862,702	6.2
St Paul Companies	1,329,042	4.4
Travelers/ Citigroup Companies	1,236,872	4.1
CNA Insurance Companies	1,156,729	3.9
ACE INA Group	1,087,187	3.6
Kemper Insurance Companies	895,904	3.0
Royal & SunAlliance USA	741,981	2.5
Allianz of America, Inc	741,474	2.5

□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 그룹	인수증권수의 비중	보험료 M/ S
Chubb	21%	16%
AIG	19%	34%
Lloyd's/ London	9%	7%
ACE	8%	1%
Admiral	8%	4%
Great American	4%	2%
X.L. Insurance	4%	7%
Hartford	3%	2%
Genesis	2%	4%
CNA	2%	1%

Insurance Business Report (통권 제18호)

발 행 일	2003년 8월 일
발 행 인	임 재 영
편 집 인	오 영 수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3 6 8 - 4 0 0 0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소

(☎368-4194, 368-431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가 : 5,000원